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061197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24. 10. 30 선고 2023나2061197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603191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탈퇴)A 유한회사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원고승계참가인기술보증기금

원고 및 원고승계참가인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고, 피항소인1.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승현

피고, 항소인2. C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현

담당변호사 권재상, 이영준

변론 종결2024. 8. 30.

판결 선고2024. 10. 3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0가합603191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D과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2020. 9.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D에게 위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등기국 2020. 10. 5. 접수 제171349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D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9. 1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 주식회사는 D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2020. 9. 28. 접수 제3795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다.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 B이 각 부담하고, 원고승계참가인과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 주식회사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항, 나.항 및 E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844,069,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승계참가인에게 844,06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E 주식회사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9. 12. 26. 체결된 매매계약을

844,069,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B은 원고에게 844,069,04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C 주식회사

제1심판결 중 피고 C 주식회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문 제3면 8~9행 사이에 '3) 원고승계참가인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히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특수법인이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표 안 마지막 행의 '이행하기로 한다.' 다음에 '또한, 유동화회사가 기술보증기금에게 대물변제계약 등을 원인으로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같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2행부터 제9면 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바. 원고승계참가인의 승계참가

1) 원고는 2023. 8. 8. 원고승계참가인과 사이에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E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 채권 및 이에 부수하는 보증, 담보권 등 기타 모든 권리'를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양도하였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채권양도통지에 관한 대리권을 위임받아 2023. 8. 22. E과 D에게 위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2) 원고승계참가인은 2024. 5. 23.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 14, 17, 21, 22, 30, 32, 33호증, 을가 제1, 2, 4, 5, 6, 11, 13, 14, 20호증, 을나 제1, 2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법원의 2021. 11. 1.자 H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공명령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가. 피고 B에 대한 주장 요지

1) 이 사건 제1매매계약에 관한 주장

피고 B와 E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은 E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사해행위 이후에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1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H은행의 근저당권이 변제로 모두 말소되었으므로, 위 매매계약은 위 각 부동산의 시가감정액 1,041,069,040원에서 사해행위 당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197,000,000원을 공제한 잔액인 844,069,040원(= 1,041,069,040원 - 197,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양수한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을 844,069,04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을 위한 가액배상으로 피고 B이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884,069,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관한 주장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한 채권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함께 이전되었다. 피고 B와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은 D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B이 D에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10항 기재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나. 피고 C에 대한 주장 요지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연대보증인인 D에 대한 채권도 원고승계참가인에게 함께 이전되었다. 피고 C과 D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은 D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사해행위이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은 D에 대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이 D에게 위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 목록 순번 제11 내지 13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 제1심판결문 제9면 13행의 '사실이 인정되므로, ~ 될 수 있다.'를 '사실과 원고승계참가인이 원고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위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5행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다음에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6다11494 판결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6행의 '원고는'을 '원고승계참가인은'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9행의 '원고의'를 '원고승계참가인의'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0면 18행부터 제11면 마지막 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 갑 제13호증, 을가 제16, 2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N(2024. 1. 26.자, 2024. 8. 1.자), 서대문구청(2024. 1. 29.자), 종로구청(2024. 1. 31.자), 서울지방조달청(2024. 2. 6.자), 동대문구청(2024. 3. 7.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2024. 3. 29.자), 한국과학기술원(2024. 4. 2.자), 광진구청(2024. 4. 5.자), 포천시청(2024. 6. 27.자), 강서구청(2024. 7. 23.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E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2. 26.경 "소극재산"으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채무 704,000,000원, 대출금(네트워크론) 채무 532,179,700원(2020. 3~4.경 상환된 것으로 보인다)의 합계 1,236,179,700원을, "적극재산"으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서대문구청 등에 대한 공사대금(미수금)채권 합계 2,450,179,198원을 각 보유하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었는바, 원고승계참가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 그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무자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서대문구청 (서울지방조달청)	2019. 11. 29.	5,821,200	2020. 2. 5.	5,821,200
2	한국과학기술원	2019. 12. 16.	314,505,600	2019. 12. 27. 2020. 2. 27.	90,000,000 224,505,600
3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	2018. 6. 28.	671,823,750	2020. 3. 10.	671,823,750
4	강서구청 (서울지방조달청)	2018. 12. 13.	19,535,290	2020. 4. 28.	19,535,290
5	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	2018. 7. 16.	583,687,300	2020. 4. 29.	583,687,300
6	포천시청	2019. 10. 31.	77,900,000	2020. 5. 14.	77,900,000
7	성북구청 (서울지방조달청)	2018. 11. 1.	59,820,500	2020. 5. 28.	59,820,500
8	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	2019. 10. 28.	307,000,000	2020. 7. 7.	307,000,000
9	강남8공구	2017. 10.경	7,700,000	2020. 7. 23.	7,702,800
10	위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지방조달청)	2018. 1. 26.	80,560,000 1) 이 법원의 2024. 3. 29.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12. 26. 기준 공사대금은 80,560,220원으로 보이나, 소액이고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로 보여, 피고 B의 주장 금액대로 인정한다(피고 B 2024. 5. 29.자 준비서면 8면).	2020. 9. 25.	80,560,220
11	광진구청 (서울지방조달청)	2019. 2. 19.	301,005,558	2020. 9. 24.	301,005,560
12	동대문구청 (서울지방조달청)	2019. 4. 9.	20,820,000 2) 이 법원의 2024. 3. 7.자 동대문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12. 26. 기준 공사대금은 20,880,000원으로 볼 여지도 있으나, 수금액은 20,820,000원인 점,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주장 금액대로 인정한다(피고 B 2024. 5. 29.자 준비서면 8면).	2020. 9. 29.	20,820,000
공사대금 합계	2,450,179,198	수금액 합계	2,450,182,220		

① 순번4의 강서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강서구청은 2019. 12. 26. 당시 E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채권 금액은 없었다'고 회신하였으나(이 법원의 강서구청에 대한 2024. 7. 23.자 사실조회결과), 을가 제16호증의5,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조달청이 2018. 12. 13. E과 사이에 '공사명: X,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계약금액: 19,535,29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 4. 28. E에 19,535,290원을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강서구청으로서는 '강서구청이 아닌 서울지방조달청이 E에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회신하였을 여지도 없지 않아 보이므로,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를 위 표 기재와 같이 19,535,290원으로 인정한다.

② 순번6의 포천시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포천시청은 2019. 12. 26. 당시 E에 대하여 지급해야 할 채권 금액은 없었다'고 회신하였으나(이 법원의 포천시청에 대한 2024. 6. 27.자 사실조회결과), 을가 제16호증의8,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가 2019. 10. 31. E과 사이에 '공사명: Y, 계약금액: 83,096,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포천시 안전도시국 상하수과가 2020. 5. 14. E에 77,900,000원을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E이 2019. 12. 26. 당시 포천시청에 대하여 위 계약에 관한 77,900,0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를 위 표 기재와 같이 77,900,000원으로 인정한다.

③ 순번7의 성북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을가 제16호증의9,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조달청이 2018. 11. 1. E과 사이에 '공사명: Z,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금액: 119,641,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 5. 28. E에 59,820,500원을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 B은 'E이 2019. 12. 26. 당시 성북구청에 대하여 위 계약에 관한 59,820,500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를 위 표 기재와 같이 59,820,500원으로 인정한다.

④ 순번11의 광진구청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광진구청은 2019년에 E과 체결한 계약 내역 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이 법원의 광진구청에 대한 2024. 4. 5.자 사실조회결과), 을가 제16호증의16, 을가 제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지방조달청이 2019. 2. 19. E과 사이에

'공사명: AA,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계약금액: 430,007,94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 9. 24. E에 301,005,560원을 이체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광진구청으로서는 'E와 서울지방조달청 사이에 위 계약이 체결된 것이므로 광진구청에는 위 계약에 관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회신하였을 여지도 있어 보이며, 피고 B은 'E이 2019. 12. 26. 당시 광진구청에 대하여 위 계약에 관한 301,005,558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사대금 액수를 위 표 기재와 같이 301,005,558원으로 인정한다.

⑤ 위 표 기재와 같이 인정된 공사대금채권 외에도, 피고 B은 'E이 2019. 12. 26. 당시 보유하고 있었던 ㉠ 포천시청에 대한 2019. 3. 10.자 AB에 따른 17,938,000원의 채권, ㉡ N에 대한 2019. 12. 9.자 AC 등 계약에 따른 174,889,000원의 채권, ㉢ 종로구청에 대한 2017. 12.자 승인도담 공영주차장계약에 따른 23,162,730원의 채권도 E의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포천시청, N, 종로구청은 모두 '포천시청, N, 종로구청이 2019. 12. 26. 당시 E에 지급해야 할 채권 금액은 없었다'고 회신하였는데(이 법원의 포천시청에 대한 2024. 6. 27.자 사실조회결과, N에 대한 2024. 8. 1.자 사실조회결과, 종로구청에 대한 2024. 1. 31.자 사실조회결과), 이와 달리 E이 2019. 12. 26. 이전에 피고 B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계약서 등이 없는 이상, 갑 제22호증이나 피고 B이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사해행위 시점인 2019. 12. 26. 당시 위 주장의 공사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채권을 E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지 않는다(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2019. 12. 26. 당시 E의 적극재산은 소극재산을 훨씬 초과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각 채권이 적극재산으로 포함되지 않더라도 E이 무자력 상태가 아니었다는 결론에는 영향이 없다).

⑥ 피고 B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공사대금채권과 관련하여, E의 적극재산으로 이 법원의 2024. 3. 29.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표 순번5(2018. 7. 16.자) 기재 공사대금채권 액수가 682,470,000원, 순번8(2019. 10. 28.자) 기재 공사대금채권 액수가 612,622,500원으로

회신되었고, 그 외에 E이 2019. 12. 26. 당시 'AD' 관련 공사대금채권 150,839,000원도 가지고 있다고 회신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위 각 계약은 모두 조달계약으로서 조달청이 업체에 직접 대가를 지급하는 대지급 형태의 계약이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E에 직접 지급해야 할 금액은 없었다'는 것이므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E과 사이에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관계에 있지는 않았던 점, ㉡ 위 사실조회결과에는 그 회신내용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첨부되어 있지 아니한 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와 관련한 은행 거래내역상의 공사계약상 수금액은 위 표에서 인정한 공사대금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이고, 피고 B은 위 수금액 등에 근거하여 제1심에서 위 표 기재 순번3, 5, 8, 10의 채권과 공사대금액수만 주장하였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회신결과만으로 피고 B의 주장 금액과 주장 채권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 B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승계참가인은, ① E의 소극재산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502,920,000원(구상금채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국세 체납액(포천세무서) 1억 원,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포함하여야 하고, ② E의 적극재산에 채권자들의 추심의 용이성 및 확실성이 보장되지 아니하는 서대문구청 등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되며, E이 2019. 12. 26. 당시 공사를 완료하지 않아 발생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도 포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아래에서 3~5행의 '앞서 본 ~ 이르렀고'를 '앞서 본 바와 같이 E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2. 26. 당시 서대문구청 등에 대하여 2,450,179,198원의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12~13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그리고 E의 소극재산에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상응하는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E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5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은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이후인 2020. 4. 29.경이므로, 이 사건 제1매매계약 당시의 E의 소극재산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17~18행 사이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E의 소극재산에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을가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이 2020. 2. 27.경부터 2020. 7. 7.경까지 서대문구청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 중 일부를 AE 주식회사, AF 주식회사 등에 이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나, 위와 같은 이체사실만으로는 E이 이 사건 제1매매계약 체결일인 2019. 12. 26. 당시 위 회사들에 대하여 외상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E의 소극재산에 거래처에 대한 외상대금채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의 '각주 1) 부분'을 삭제한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13행의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E의 적극재산에서 'E이 2019. 12. 26. 당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E은 서대문구청 등과 사이에 위 표 기재와 같은 공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공공기관인 서대문구청 등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할 것이고, E이 공사를 완료한 때에 비로소 그 공사대금채권을 보유하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E의 적극재산에서 E이 2019. 12. 26. 당시 공사를 완료하지 않은 공사대금채권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4면 17행의 '원고'를 '원고승계참가인'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5면 11행부터 15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과 피고 B이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3)

● 제1심판결문 제16면 11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3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9면 마지막 행의 '(4) 소결론'을 '라) 소결론'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5행부터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D과 피고 C이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이전에 원고는 이 사건 사채 인수계약 및 유동화자산 양도계약에 따라 D을 연대보증인으로 한 E에 대한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채금에 관한 양수금채권을 양수하였으므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이미 발생하여 존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10행의 '2)'를 '3)'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마지막 행의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15~16행의 '이 법정'을 '제1심법정'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5행의 '3)'을 '4)'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3면 9행의 '원고가'를 '원고승계참가인이'로 고쳐 쓰고, 10행의 '원고의'를 '원고승계참가인의'로 고쳐 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승계참가하였고 원고가 탈퇴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강승준

판사김민아

판사양석용

별지

1) 이 법원의 2024. 3. 29.자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12. 26. 기준 공사대금은 80,560,220원으로 보이나, 소액이고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로 보여,

피고 B의 주장 금액대로 인정한다(피고 B 2024. 5. 29.자 준비서면 8면).

2) 이 법원의 2024. 3. 7.자 동대문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2019. 12. 26. 기준 공사대금은 20,880,000원으로 불 여지도 있으나, 수금액은 20,820,000원인 점, 결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소액인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 B의 주장 금액대로 인정한다(피고 B 2024. 5. 29.자 준비서면 8면).

3) 채권자의 채권이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되어 있는 이상 사해행위 이후에 채권이 양도되어도 그 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7714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을 사해행위 이후에 갖추었더라도 채권양수인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데 아무런 장애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다5822 판결 등 참조).